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
-일본의 독도영유권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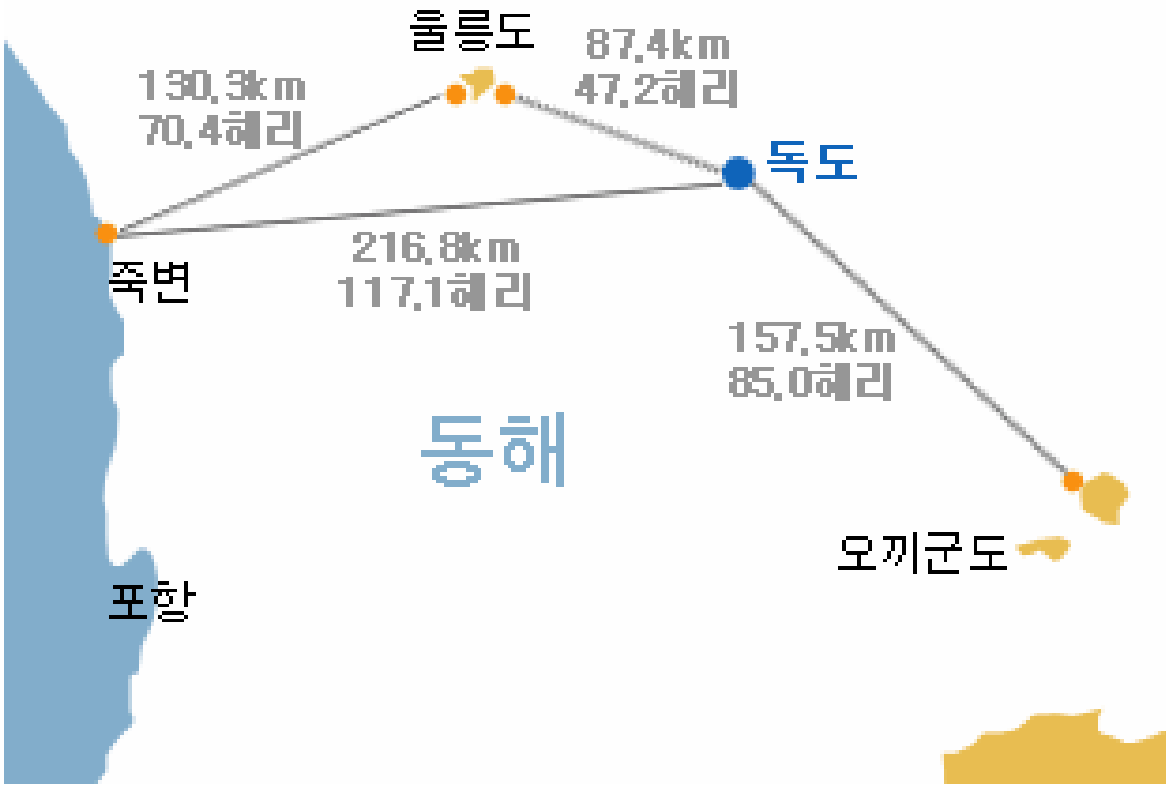

- [들어가며]
- 2012년 8월24일, 일본정부는 8월10일에 실시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항의하면서 '영토국회'를 열어 독도가 일본영토인 3가지 이유를 공표해 그것을 세계를 향해 인터넷 생 중개 한 바 있다.
- 2013년 10월 일본정부는 위의 내용으로 1분27초자리의 독도동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에 올렸다.

1.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2012.8.24, 및 YouTube)

(1)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2)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3)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1951년 7월 한국은 한국영토조항에 독도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 요구를 거절(러스크 서한)했다. 즉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

(1)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비판과 극복→ 17세기말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일본이 인정한 공문서가 남아 있다. 즉 17세기말 일본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해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17세기 일본 돗토리번 어부들이 약70년간 울릉도, 독도를 왕래하여 어로활동을 했다.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칭했다.

역사적 사실-1) 17세기말, 울릉도를 왕래했던 일본의 돗토리번은 일본정부(=에도막부)에게 울릉도(죽도)· 독도(송도)가 자신의 영지가 아니라고 보고했다. (1696.1.25)

- '죽도(울릉도)는 떨어져 있는 섬이므로 (중략) 호키수(伯耆守 : 돗토리번의 한 지방의 장)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 '송도(독도)는 돗토리번 소속이 아닙니다. 죽도(울릉도)에 도해하는 길에 있는 섬입니다.'
- '송도(독도)는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3일후 에도막부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 1. 28)

송도(松島=독도)가 자기 영지가 아니라고 한 돗토리번의 보고서(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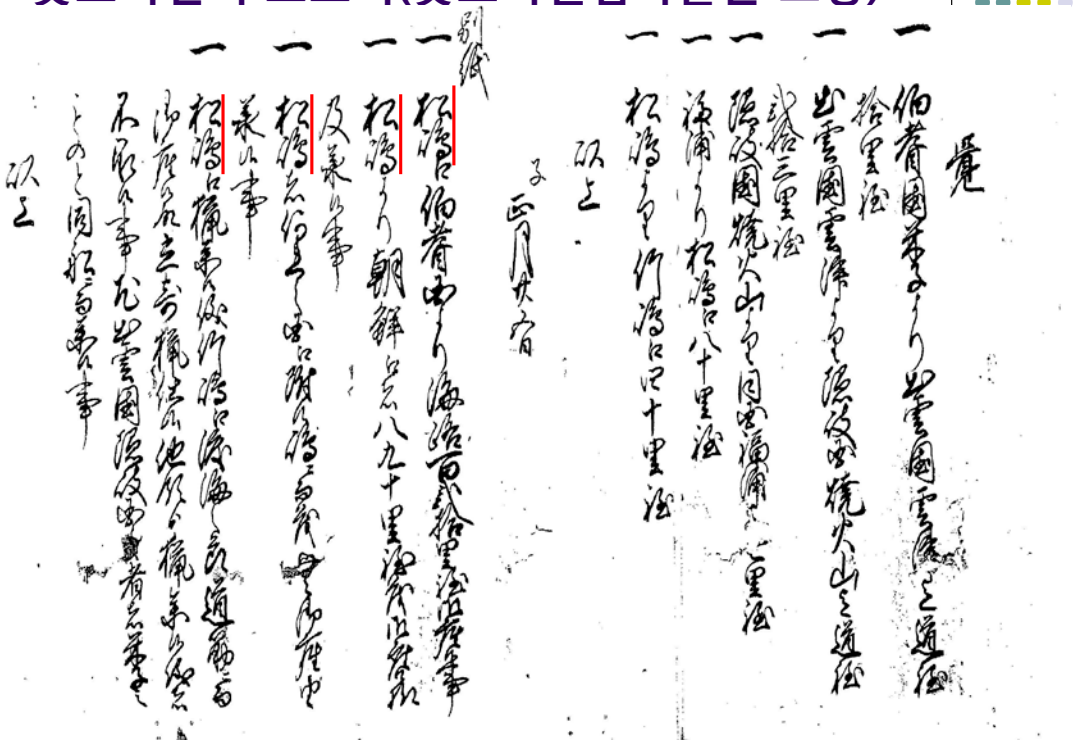

역사적 사실-2) 1870년 일본 외무성이 17세기말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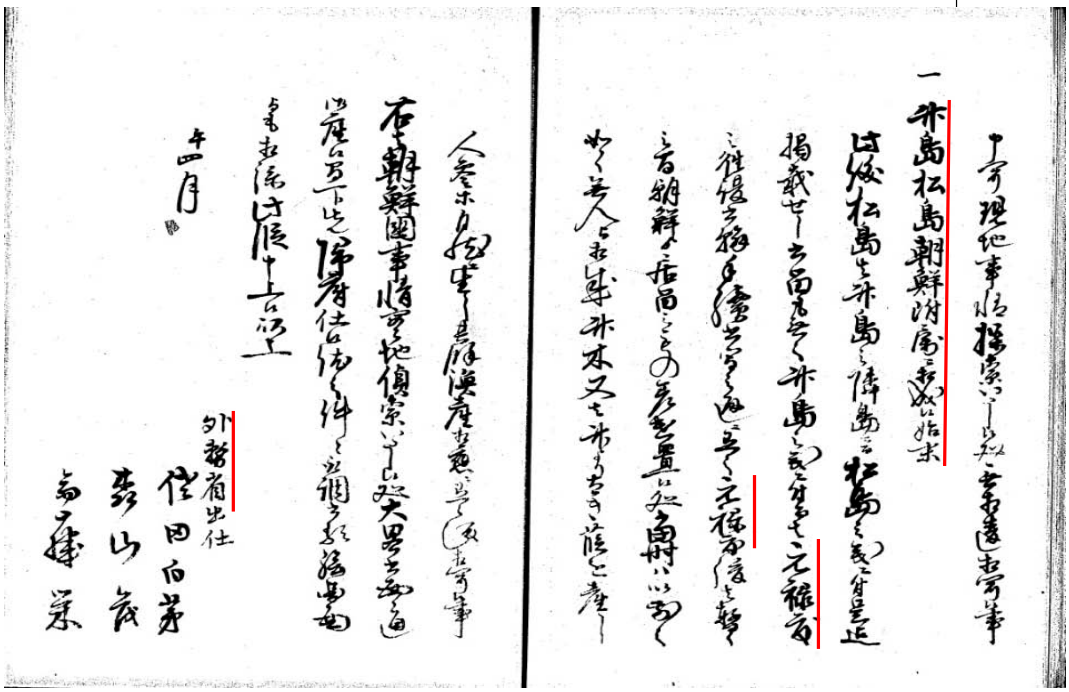

- [해설]
- 문서제목 :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전말)

- 元祿年(원록년)=일본의 연호 중 하나=1688-1704 : 원록년간에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 17세기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적혀 있음.

역사적 사실-3)
1877년,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공식확인.
(태정관 지령문)

번역 : "일본해(=동해) 내 죽도와 그 밖에 있는 한섬(=독도)은 (중략) 원록 5<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중략) 드디어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어졌다"

"서면에 있는 죽도(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의 건은 본방(본방)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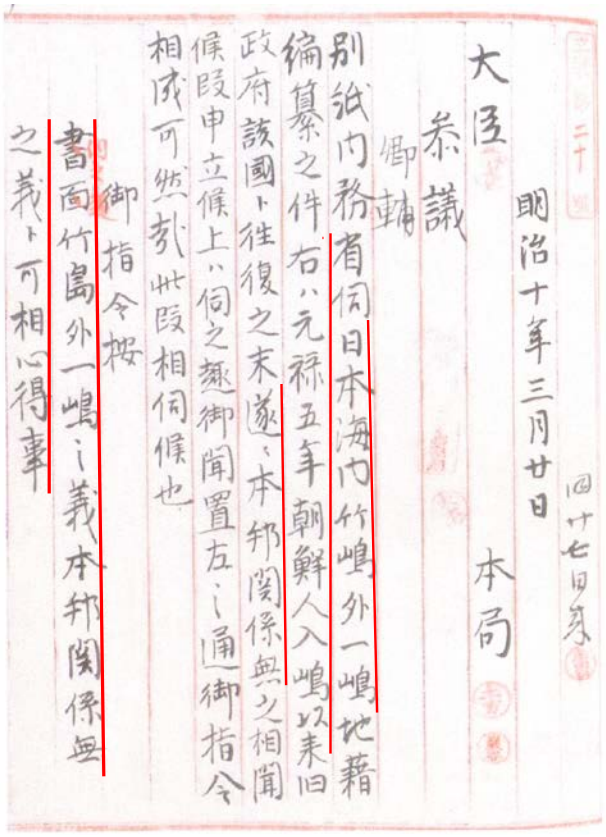
明治十年三月廿日
大臣
參議
本局
御輔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藉
編纂之件右ハ元祿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
政府該國ト往復之末遂〻本邦関係無之相聞
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〻通御指令
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御指令按
書面竹島外一嶋〻義本邦関係無
之義ト可相心得事

- **<태정관 지령문> 5페이지를 보면,'밖에 있는 한섬'이란 송도(=독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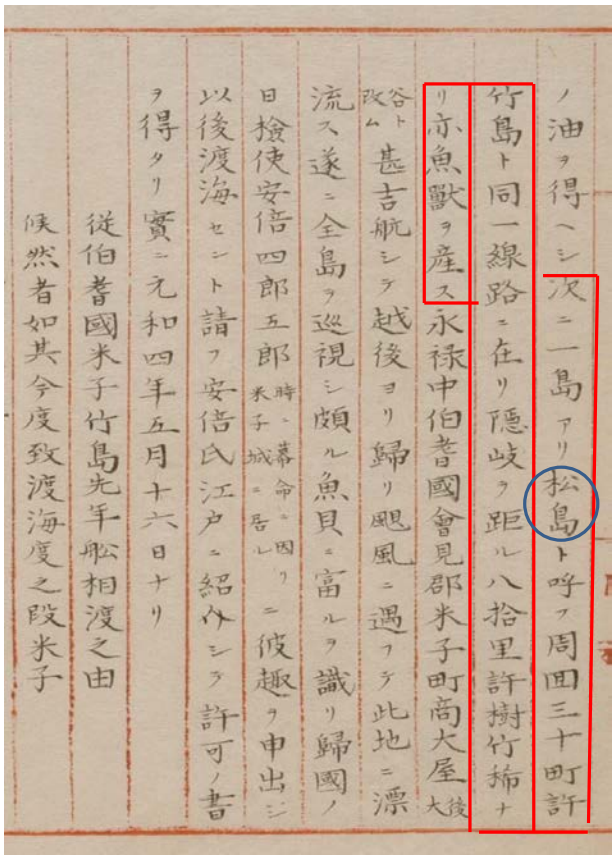
ノ油ヲ得ヘシ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周囲三十町許
竹島ト同一線路ニ在リ隠岐ヲ距ル八拾里許樹竹稀ナ
リ亦魚獸ヲ産ス永祿中伯耆國會見郡米子町商大屋大後
谷ト改ム甚吉航シテ越後ヨリ歸リ颶風ニ遇フテ此地ニ漂
流ス遂ニ全島ヲ巡視シ頗ル魚貝ニ富ルヲ識リ歸國ノ
日檢使安倍四郎五郎時ニ幕命ニ因リ米子城ニ居ル ニ彼趣ヲ申出シ
以後渡海セント請フ安倍氏江戸ニ紹介シテ許可ノ書
ヲ得タリ實ニ元和四年五月十六日ナリ
從伯耆國米子竹島先年船相渡之由
候然者如其今度致渡海度之段米子

죽도와 그 밖의 한섬이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도(태정관 지령문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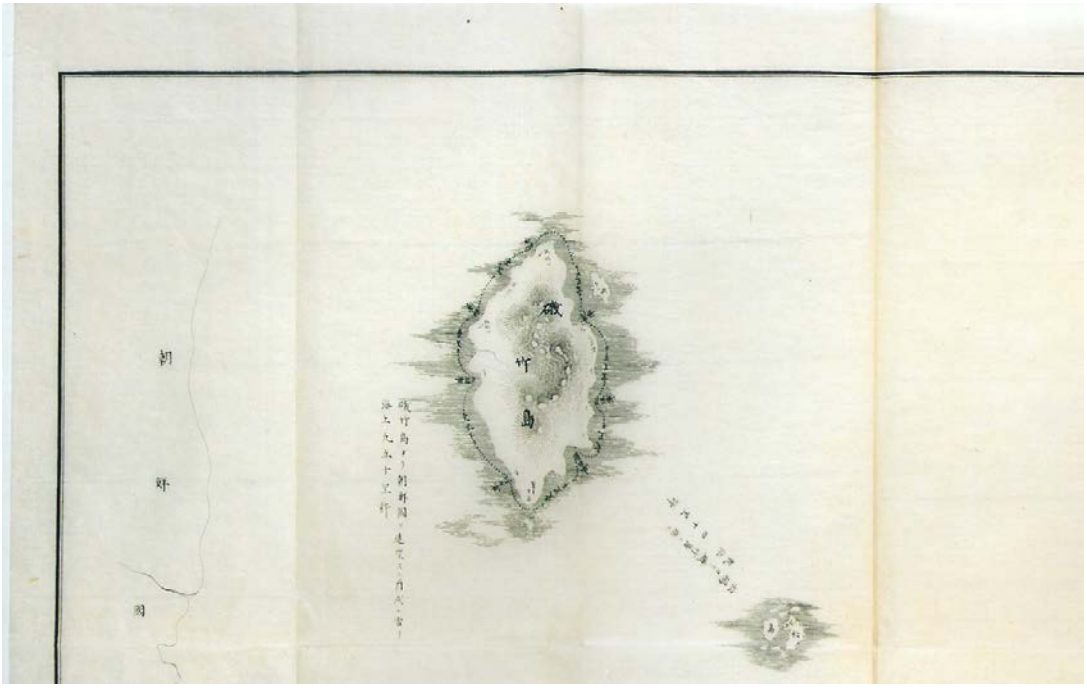

죽도(울릉도) 아래쪽에 있는 섬이 송도(=독도)다. 이 두 섬이 일본땅이 아니라 조선의 부속이라고 일본정부는 결론을 내렸다.

1877년 '대일본전도' :일본 육군참모국이 작성
: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의 주장(1)에 대한 결론]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일본이 17세기 말에 인정한 사실을 증명한 공문서가 적어도 3가지 남아 있다. 즉 17세기말 일본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해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일본은 관계 서류를 공표하지 않거나 은폐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17세기 말에 해결된 문제이고 결론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데 있다.

(2)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정식 편입했다.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증거가 없다.

* 비판과 극복 : 1900년10월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도군 소속 섬으로 결정했고 늦어도 1904년까지는 독도라는 이름을 확정해 1906년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했다.

1889년 이후 울릉도와 독도로 들어오는 일본선박은 조선정부에 어업 세를 납부했고 두 섬에서 얻은 어패류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조선은 수출세를 징수했다.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 했다는 증거.

*독도명칭의 확립과정

- 1900년10월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도군 소속 섬으로 결정했다.
- 1883년부터 시작된 울릉도 이주정책으로 약 120명이 울릉도 주민이 되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이었다.
- 그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는데 전라도 방언으로 '돌'이 '독'이 되므로 '돌섬'이 '독섬'이 되어 '독도'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 석도(石島)는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명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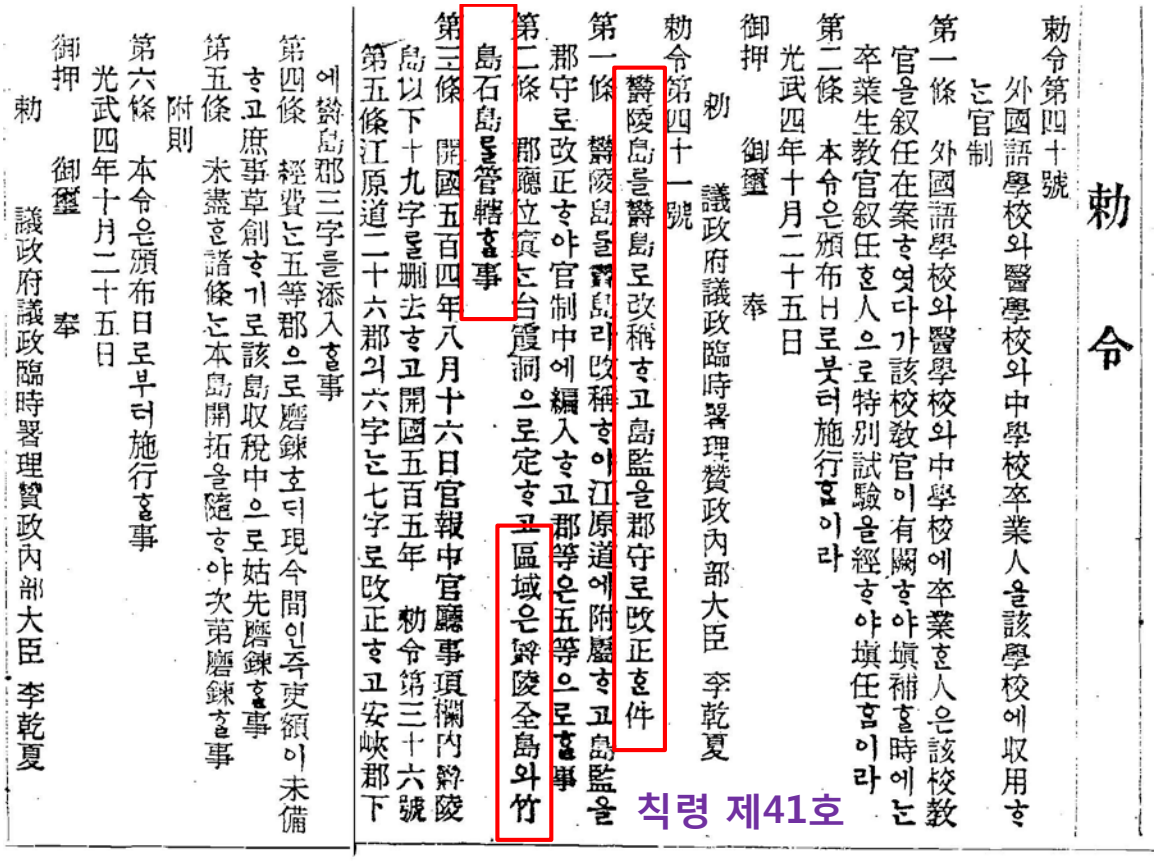

勅令

勅令第四十號
外國語學校와醫學校와中學校卒業人을該學校에收用ᄒᆞᄂᆞᆫ官制
第一條 外國語學校와醫學校와中學校에卒業ᄒᆞᆫ人은該校敎官을敍任在案ᄒᆞ엿다가該校敎官이有闕ᄒᆞ야塡補ᄒᆞᆯ時에ᄂᆞᆫ卒業生敎官敍任ᄒᆞᆫ人으로特別試驗을經ᄒᆞ야塡任ᄒᆞᆷ이라
第二條 本令은頒布日로붓터施行ᄒᆞᆯ이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勅令第四十一號
欝陵島를欝島로改稱ᄒᆞ고島監을郡守로改正ᄒᆞᆫ件
第一條 欝陵島를欝島라改稱ᄒᆞ야江原道에附屬ᄒᆞ고島監을郡守로改正ᄒᆞ야官制中에編入ᄒᆞ고郡等은五等으로ᄒᆞᆯ事
第二條 郡廳立處ᄂᆞᆫ台霞洞으로定ᄒᆞ고區域은欝陵全島와竹島石島를管轄ᄒᆞᆯ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官廳事項欄內欝陵島以下十九字를刪去ᄒᆞ고開國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第五條江原道二十六郡의六字ᄂᆞᆫ七字로改正ᄒᆞ고安峽郡下에欝島郡三字를添入ᄒᆞᆯ事
第四條 經費ᄂᆞᆫ五等郡으로磨鍊ᄒᆞ되現今間인즉更額이未備ᄒᆞ고庶事草創ᄒᆞ기로該島收稅中으로姑先磨鍊ᄒᆞᆯ事
第五條 未盡ᄒᆞᆫ諸條ᄂᆞᆫ本島開拓을隨ᄒᆞ야次第磨鍊ᄒᆞᆯ事
附則
第六條 本令은頒布日로부터施行ᄒᆞᆯ事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칙령 제41호

***독도명칭이 1904년 문헌에 최초로 기재**

- **1904년 9월25일부, 군함 니이다카(新高)의 일지 :「韓人之を独島と書し、本邦漁夫等略してリアンコ島と称せり」(한인 이것을 독도로 쓰고 본방 어부 등이 줄여서 리앙코도로 칭한다.)**
- **'리앙코도'란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여 '리앙쿠르 락스'로 명명했는데 일본인들이 그 명칭을 줄여서 부른 명칭.**

- 독도는 15세기 중반 이후 '우산도'로 불렸으나 1882년 고종이 울릉도 이주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산도' 명칭을 없앴고 대신 일본식 명칭인 '송도'를 독도명칭으로 한때 사용했다.
- 그런데 울릉도에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고 그 명칭의 한자표기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석도(石島)이고 1904년 일본 군함이 '독도'라는 명칭이 생겼음을 확인했다.
-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독도라는 명칭을 문헌에 남겼다.

- 독도는 15세기 중반 이후 '우산도'로 불렸으나 1882년 고종이 울릉도 이주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산도' 명칭을 없앴고 대신 일본식 명칭인 '송도'를 독도명칭으로 한때 사용했다.
- 그런데 울릉도에 이주한 전라도 사람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고 그 명칭의 한자표기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석도(石島)였다. 그러나 1904년 일본 군함이 '독도'라는 명칭이 생겼음을 확인했다.
-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과 한국정부가 '독도'라는 명칭을 한국사상 처음으로 문헌에 남겼다.

1906.3. 이명래 보고서 : 울도군수 심흥택과 한국정부가 독도명칭을 한국사상 처음으로 문헌에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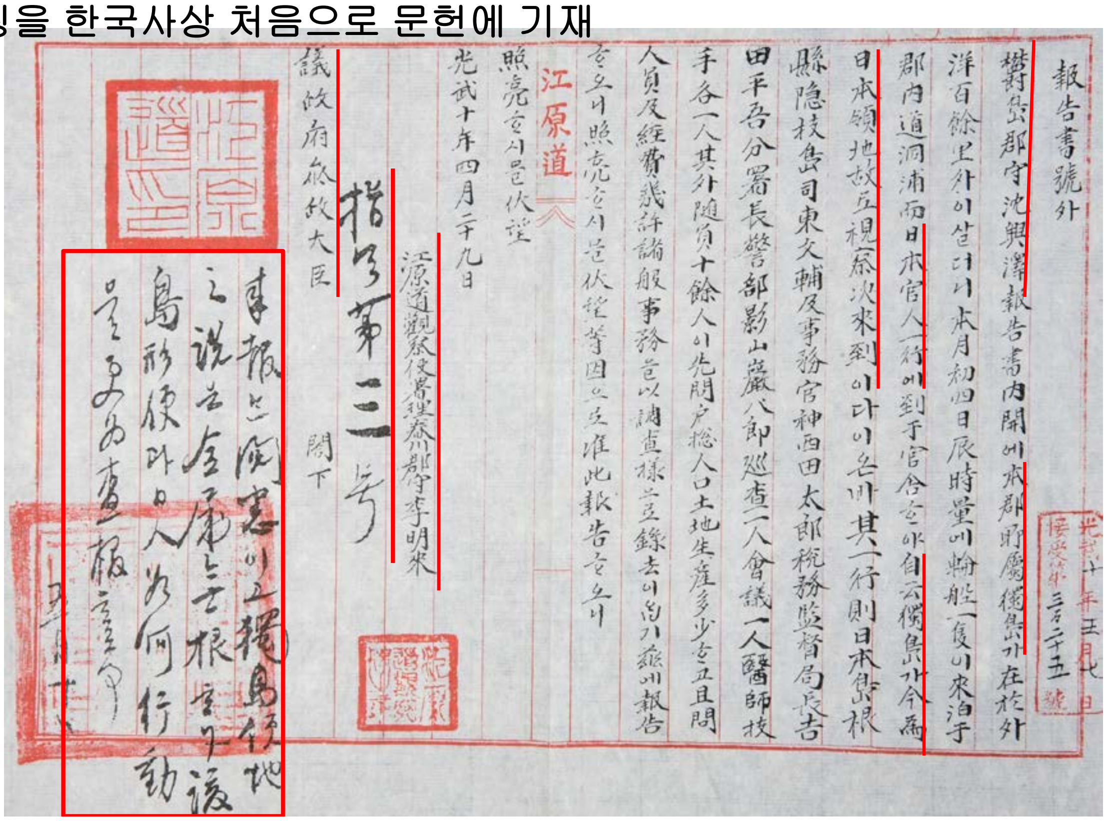
報告書號外

鬱島郡守沈興澤報告書內開에 本郡所屬獨島가 在於外洋百餘里外이삽더니 本月初四日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郡內道洞浦而 日本官人一行에 到于官舍ᄒᆞ야 自云獨島가 今爲日本領地故로 視察次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則 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事務官神西田太郎 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分署長警部影山巖八郎 巡查一人 會議一人 醫師技手各一人 其外隨員十餘人이 先問戶摠人口土地生産多少ᄒᆞ고 且問人員及經費幾許 諸般事務를 以調査樣으로 錄去이옵기 玆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伏望等因으로 准此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시믈 伏望

光武十年四月二十九日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

議政府參政大臣 閣下

指令 第三號

來報는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ᄒᆞ니 該島形便과 日人如何行動을 更爲査報ᄒᆞᆷ

*『이명래보고서』(1906.3.독도박물관소장)

- 한국이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1906년 3월**.
- 독도를 순회한 일본 시마네현 시찰단이 울릉도에 들러 구두로 '량코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울도군수 심흥택**에 전달.
- 심흥택이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강원도에 보고.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는 그 보고를 의정부에 보고.
- 이에 대한 답장으로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지령 제3호**'를 하달하여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사실무근, 일인들의 행동을 주시해라**' 등 지령을 내렸다.
- 독도를 한국영토로 한국정부가 확인한 기록이다.

* 1889년 이후 울릉도와 독도로 들어오는 일본선박은는 조선정부에 어업 세를 냈고 두 섬에서 얻은 어패류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조선은 수출 세를 징수했다. →한국이 '과세'를 통해 1905년 이전에 독도를 실효지배 했다는 증거.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부산영사관보고서)

(번역) 수출세의 건 : 수출품에 대해서는 전 도감 오상익과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들 사이에 조약문이 있다. 수출할 때마다 수출액의 100분의 2를 콩을 수출세로 도감에게 납부해야 하고 현 도감 배계주도 오늘날까지 이 조약에 의거해 징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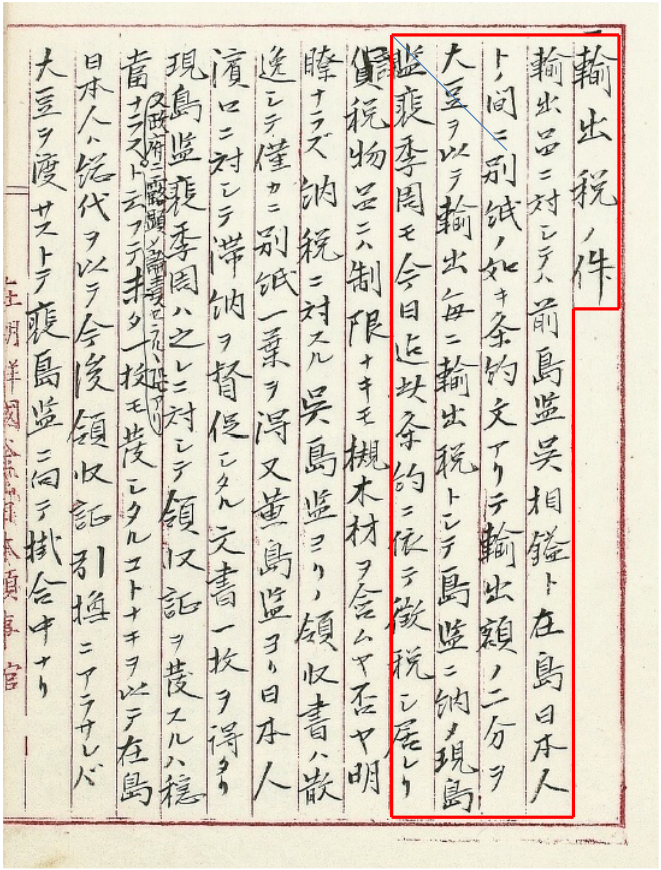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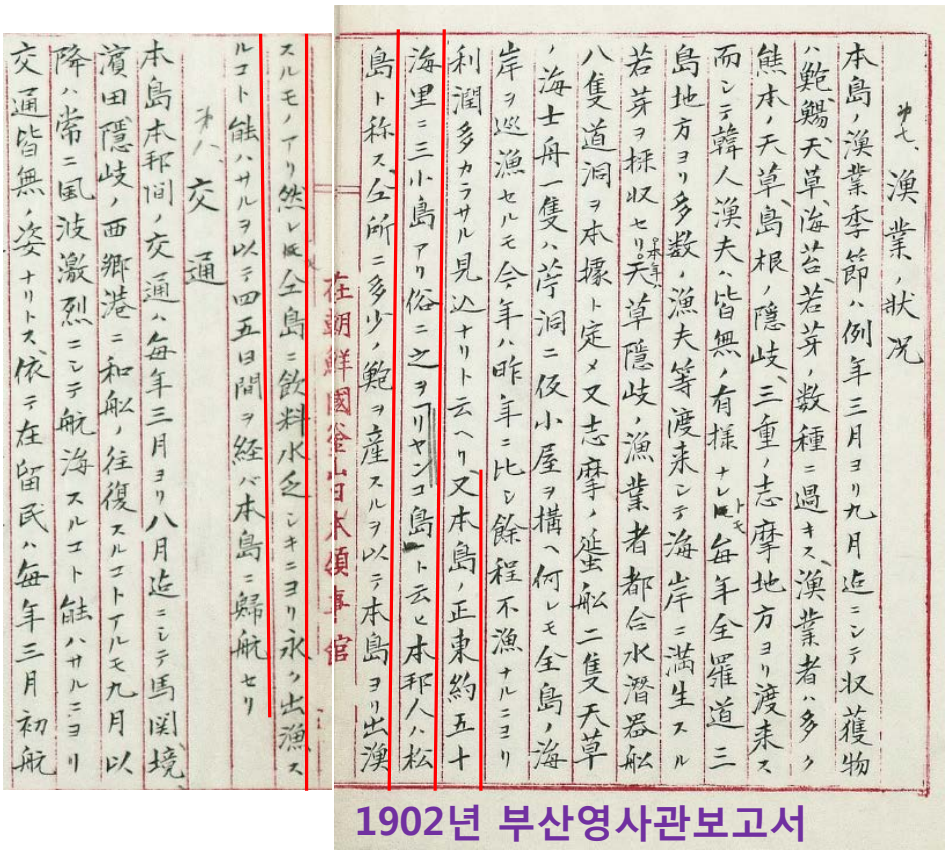

1902년 부산영사관보고서

[일본의 주장(2)에 대한 결론]

1905년 이전에 **독도에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었다**. 19세기 말경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수출 세를 **과세**했고 1900년에는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석도(石島)라는 이름으로 울도군 소속 섬으로 결정했다.

일본이 독도명칭을 잊어버려 서양이름으로 독도를 불렀을 기간에도 한국은 늦어도 1904년까지 **독도**라는 이름을 확정해 실효 지배 했다. 1905년 일본은 비밀리에 독도를 편입했으나 1906년 한국정부와 울도군수 심흥택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확인**했다.

(3) 일본의 주장 :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1951년 7월 한국은 한국영토조항에 독도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 요구를 거절(러스크 서한)했다. 즉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

* 비판과 극복 :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가 합의한 문서가 아니라 미국만의 견해이자 비밀문서로 한국에 송부되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

1) 연합국은 SCAPIN677호를 통해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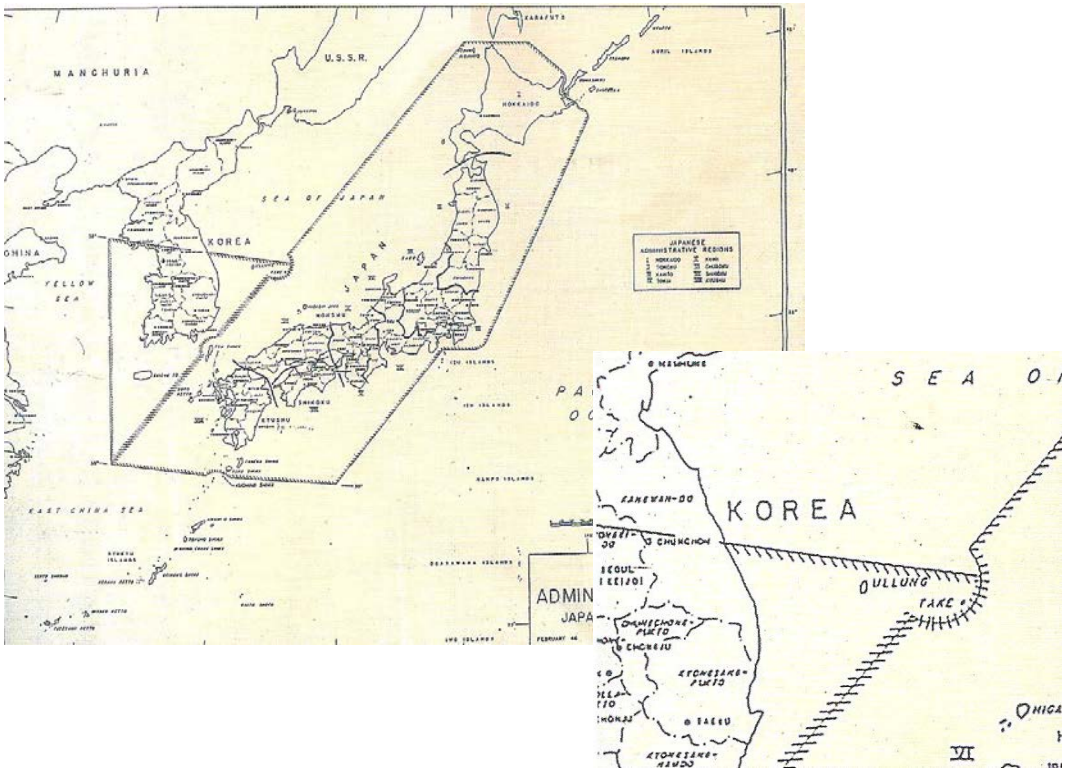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는 1951년 9월에 조인되었고 52년 4월에 발효되었다. (한국은 연합국이 되지 못했고 비 조인국의 입장이었으므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다)

- 1951.6. : 한국영토조항 확정 : 제2조 (a)항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한국영토 조항에 독도명칭이 보이지 않았다.

- 1951.7.19. 한국정부, 한국영토조항에 '독도' 삽입 요구.
- 1951.8.10. 미국무성, 대한민국에 독도는 사실상 일본영토라는 '러스크 서한'을 송부.

<러스크 서한>의 중요부분

- '우리(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중략)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섬 관할 하에 있고 일찍이 한국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Letter by Ru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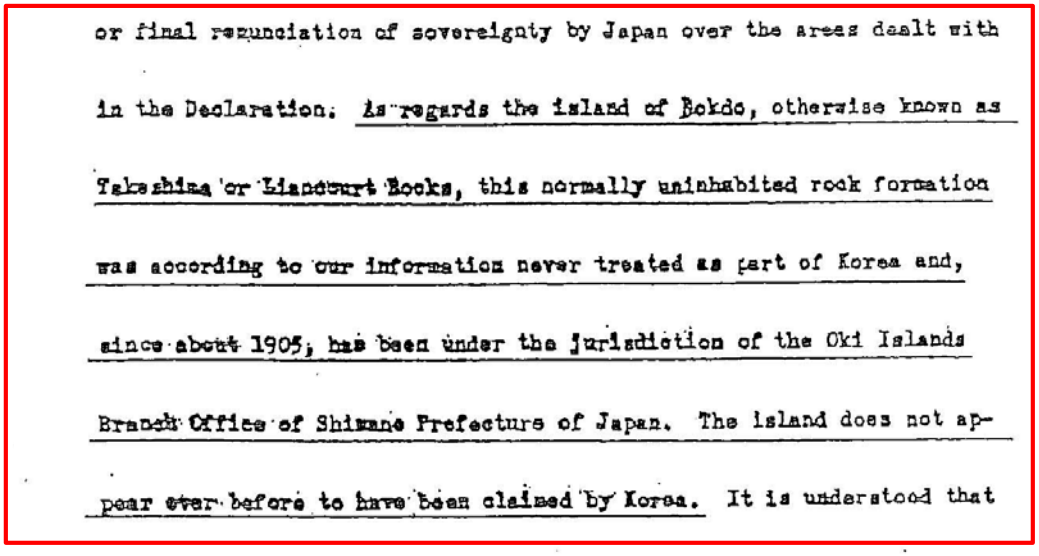

or final renunciation of sovereignty by Japan over the areas dealt with in the Declaration.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It is understoo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that "Parangdo" be included among the islands named in the treaty as having been renounced by Japan has been withdrawn.

2) '러스크 서한'의 성격

- 러스크 서한은 비공개의 문서이고 주한 미대사관은 오히려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알고 있었다.(1952. 11. 주한미대사관이 미국무성에 보낸 편지)

-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1953.8) : 러스크서한은 비밀문서 인정.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밴 플리트 보고서: 러스크서한은 공표된 문서가 아님을 고백.(1953.8)

4. <u>Ownership of Dokto Island</u>

The Island of Dokto (otherwise called Liancourt and Taka Shima) is in the Sea of Japan approximately midway between Korea and Honshu (131.80E, 36.20N). This Island is, in fact, only a group of barren, uninhabited rocks.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 **그런데 당사자였던 덜레스 대사가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TELEGRAM Foreig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OMING

ACTION COPY — Copy 1 of — FILE

SECRET SECURITY INFORMATION
Classification

ACTION TAKEN — Noted N.A.R. — Date 12/14

1. Action Polit Cent File
2. Chron
3. Reading
4. AMB & DCM

FROM: SecState WASHINGTON
NR : 497
DATE: December 9, 1953, 7 pm

Control:
Recd: December 10, 2:20 pm

PREC: ROUTINE

SENT TOKYO 1387 RPTD INFO SEOUL 497 FROM DEPT.

Tokyo's 1306 repeated Seoul 129.

Department aware of peace treaty determinations and US administrative decisions which would lead Japanese expect us act in their far in any dispute with ROK over sovereignty Takeshima. However to best our knowledge formal statement US position to ROK in Rusk Note August 10, 1951 has not rpt not been communicated Japanese. Department believes may be advisable or necessary at sometime inform Japanese Government US position on Takeshima. Difficulty this point is question of timing as we do not rpt not wish add another issue to already difficult ROK-Japan negotiations or involve ourselves further than necessary in their controversies, especially in light many current issues pending with ROK.

Despite US view peace treaty a determination under terms Potsdam Declaration and that treaty leaves Takeshima to Japan, and despite our participation in Potsdam and treaty and action under administrative agreement, it does not rpt not necessarily follow US automatically responsible for settling or intervening in Japan's international disputes, territorial or otherwise, arising from peace treaty. US view re Takeshima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to treaty. Article 22 was framed for purpose settling treaty disputes. New elementmentioned paragraph 3 your 1275 of Japanese feeling United States should protect Japan from ROK pretensions to Takeshima cannot rpt not be considered as legitimate claim for US action under security treaty. Far more serious threat to both US and Japan in Soviet occupation Habomais does not rpt not impel US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USSR nor rpt nor would Japanese seriously contend such was our obligation despite our public declaration Habomais are Japanese territory. While not rpt not desirable impress on Japanese Government security treaty represents no rpt no legal commitment on part US, Japn should understand benefits security treaty should not rpt not be dissipated on issues susceptible juidicial settlement. Therefore as sta ted DEPTEL to Pusan 365 rptd info Tokyo 1360 November 26, 1952 and restated DEPTEL 1198 US should not rpt not become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 arising from Korean claim to Takeshima.

Issue seems less acute at moment so perhaps no rpt no action on our part required. However in case issue revived believe our general line should be that this issue, if it cannot rpt not be settled by Japanese and Koreans themselves, is kind of issue appropriate for presentatio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ULLES

SECRET SECURITY INFORMATION
Classification

322 - LIANCOURT ROCKS - 1953

Dec. 11, :29 am,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2 - 2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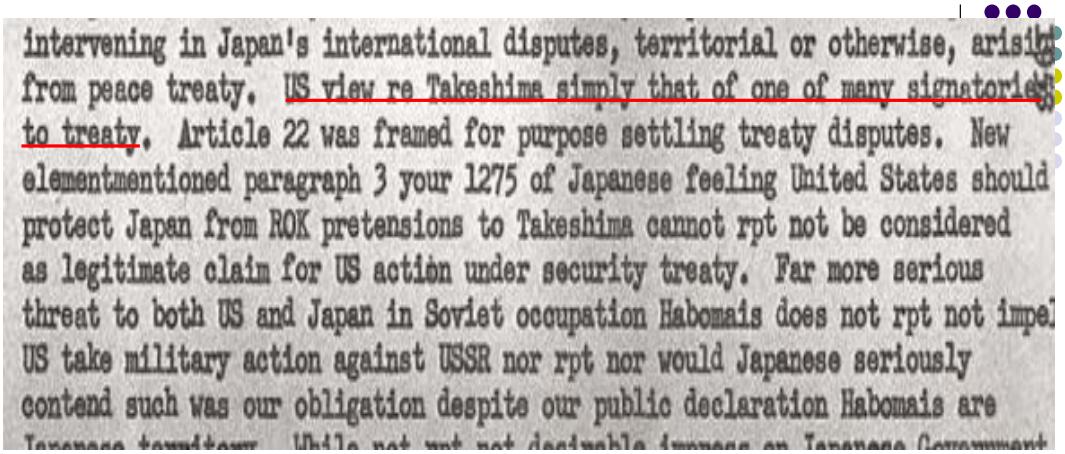
intervening in Japan's international disputes, territorial or otherwise, arising
from peace treaty. US view re Takeshima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to treaty. Article 22 was framed for purpose settling treaty disputes. New
elementmentioned paragraph 3 your 1275 of Japanese feeling United States should
protect Japan from ROK pretensions to Takeshima cannot rpt not be considered
as legitimate claim for US action under security treaty. Far more serious
threat to both US and Japan in Soviet occupation Habomais does not rpt not impel
US take military action against USSR nor rpt nor would Japanese seriously
contend such was our obligation despite our public declaration Habomais are

US view re Takeshima simply that of one of many signatories to treaty.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많은 서명국 중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 덜레스 국무장관(당시)이 기록한 비밀문서.
즉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견해는 미국만의 견해이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아니다. 많은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알고 있었다.

3) 한국에 의한 독도 불법 점거론 붕괴

- 일본의 주장(3) : '러스크 서한'으로 인해 독도는 일본영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반박할 수 없는 한국은 힘으로 독도를 불법점거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노다 발언, 8.24)
- '러스크 서한'이 미국만의 견해이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아니므로 **일본의 독도 불법 점거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 연합국은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한국을 비판한 적이 없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시, 연합국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묵인으로 승인한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결 론

-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3가지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 왜곡이다.
- 일본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독도영유권은 한국에 있다.
- 일본은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